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효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로서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실천 활동을 장려
· 지원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여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내용과

나. 중앙부처의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 나.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에 대한 조직과 센터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 다. 센터의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센터 운영위원회,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0조 ~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coolai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를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효행장려·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③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업무)”를 “(센터의 업무)”로 한다.

제10조를 제14조로, 제11조를 제15조로, 제12조를 제16조로, 제13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행장려·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효행장려사업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효행장려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센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센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u>보건복지가족부장관</u> 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 ----- <u>보건복지부장관</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u>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신설></u>	제8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센터에는 센터장과 효행장려·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u> ③ <u>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u><신설></u>	제9조(센터의 업무)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0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u>시장은 효행장려·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u><신설></u>	제11조(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효행장려사업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효행장려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2조(센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u><신설></u>	제13조(센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생략)	제14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략)	제16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 (생략)	제17조 (현행 제13조와 같음)